##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

# 한국항공대학교

제정일: 2021.4.26 - 1 -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#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캠퍼스 내 도로 등 에 적용한다.
- 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"개인형 이동장치"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.
  - ② "공유 개인형 이동장치"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 차(이용)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 한다.
- 제4조 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(區間) 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(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**제5조 (대학의 의무)** 총장은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, 충전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6조 (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의무)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- 제7조 (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)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(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 포함)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- 1 -

제정일 : 2021.4.26

#### 제 2 장 등록 및 운행

- 제8조 (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(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)는 운행 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 등록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, 등록 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할 수 없다.
  - ② 대학의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)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 생 : 학생지원팀

2. 교직원 : 총무팀

- 제9조 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.
  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 (속도 제한 등)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/h 이하로 한다.

- 제11조 (안전거리 확보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,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 등(이하 "차량 등" 이라고 한다) 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 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  -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 (보행자의 보호)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  -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

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
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 3 장 충전 및 주차

- 제13조 (충전의 장소 및 방법)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충전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감안하여 건물 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.
  - ②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.
  -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(KC 마크 및 안전 확인 신고번호 부착 의무)에 한하며 제조사별 충전 방법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총장은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  - ⑤ 화재 및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.
- 제14조 (주차 장소의 제공) ① 총장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,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.
  - ②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충전소, 자전거 거치 장소 등에 주차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.
- 제15조 (주차의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교차로・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  - 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
  - 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
  - 4.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
  - 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
  - 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- 가. 「소방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 -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  - 7.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

- 8. 건축물, 구조물, 녹지공간 위
- 9. 도로, 보도, 테라스, 주차장,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
- 10. 경사로, 계단 또는 연석 등
- 11. 총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- 제16조 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 - ②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 압수할 수 있다.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,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  - ③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차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보관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 요구 시 이동장치의 운전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로부터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 - ⑤ 제3항의 경우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전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의 성명·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- ⑥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.
- 제17조 (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 ① 총장은 제15조에 따라 견인 하도록 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

제정일 : 2021.4.26

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・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#### 제 4 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

- 제18조 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.
- 제19조 (난폭운전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 (안전운전 의무)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 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- 1.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,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
  - 2. 포트홀, 움푹 패인 곳, 장애물, 공사장, 보행자,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
  - 3.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 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
  - 4.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  - 5.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
    - 가.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
    - 나.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
  - 6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가. 정지하고 있는 경우

제정일 : 2021.4.26

- 나,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
- 7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
- 8.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말 것
- 9.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, 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보호 대 등 기타 보호장비 착용을 고려할 것
- 10.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 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
- 11.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, 후미등을 갖 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
- 12.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 고한 사항에 따를 것
- ② 총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제 5 장 안전사고

- 제22조 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고 발생 장소 및 사상자 수, 부상 정도, 재산피해 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·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3조 (안전사고의 조사) ① 대학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.
  -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  - 1. 사고 발생 일시

- 2. 사고 발생 장소
- 3. 피해 상황(사망자 수, 부상자 수, 재산피해 규모)
- 4. 사고 신고 사유
- 5. 사고 발생 경위
- 6. 신고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- 7. 사고 당사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
### 제 6 장 기 타

- 제24조 (제재조치 등)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취소 및 대학캠퍼스 내 운행을 금지하며, 대학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25조 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